

쇼핑센터 운영자를 위한 프로토콜: 부록 E

유효일: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2:01

최신 업데이트: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 쇼핑센터의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 기준 수용인원의 실내 수용인원의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 안에 있는 각 매장의 실내 수용인원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 수용인원 기준 50%로 수용인원으로 제한됩니다.
- 푸드 코트는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 수용인원 기준으로 최대 수용인원의 25%에 한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푸드 코트에서 구입한 음식은 지정된 실내외 식사 구역에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푸드 코트에서 식탁은 최소 8피트의 공간을 두고 배치해야 합니다. 모든 푸드 코트의 식당 운영자는 LACDPH의 식당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 사례 발생률, 입원을, 사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높습니다. COVID-19은 지역사회에 여전히 고위험을 초래하며, 모든 사람 및 사업체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운영과 활동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주정부의 안전한 경제 체제를 위한 청사진에서 규정한 “적색 등급”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쇼핑센터는 주의깊게 진행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COVID-19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본 프로토콜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LACDPH)은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쇼핑센터, 쇼핑몰, 스왑밋이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는 변경 운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은 특정 실내외 쇼핑몰, 쇼핑센터, 길거리 쇼핑몰 및 아웃렛 몰, 스왑밋(총칭 “쇼핑센터 운영자”라 함)에만 적용됩니다. 쇼핑센터 운영자는 매장 입주자와 상인들 등의 임차인들이 귀하의 쇼핑센터 운영에 적용되는 프로토콜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소매업체(“입주자 및 상인”)는 프로토콜을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쇼핑센터 운영자는 자신의 임차인들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해당 특정 소매업체는 주지사가 도입한 조건 외에도, 본 쇼핑센터 운영자 점검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 정의된 바에 따라, 쇼핑센터의 전체 최대 수용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실내 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또한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쇼핑센터 부지에서 안면 **마스크** 착용하기, 신체적 거리두기, 및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기와 같은 요구조건을 고객에게 상기시켜주는 안내판을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야외의 모든 영구 고정 좌석 근처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합니다. **쇼핑센터나 쇼핑몰 내부의 모든 공용 구역은 폐쇄해야 합니다. 실내외 지정 식사 구역을 제외한** 쇼핑센터 부지에 있는 모든 임시/이동식 테이블과 의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제거하거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해야 합니다. **지정 식사 구역에 앉아 있지 않을 때는** 쇼핑센터 부지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반 대중/방문객에게 반드시 상기시켜 줍니다. 일반 대중/방문객은 “부록 I: 식당 프로토콜”에 따라 **실내외** 지정 식사 구역에서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한 테이블의 모서리에서 다음 테이블의 모서리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최소 8 피트의 공간이 허용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테이블에는 4명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임차인은 DPH의 해당 업종 프로토콜 및 해당하는 모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쇼핑 센터 운영에 중요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프로토콜:

- 개인 관리 서비스
- 식당
- 소매업체

본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3) 감염 관리를 위한 확실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귀하의 시설 재개 프로토콜을 계획할 때 위 5가지 핵심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체는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시설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 _____

시설 주소: _____

건축법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_____

대중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공간의
대략적인 총 평방 피트: _____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합니다.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할 때마다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하고, 해당 직원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직업 보건 서비스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합니다.
- 직원들의 재택근무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 신체적 거리 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시차 또는 교대 근무 일정을 수립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공중 보건국(DPH)의 자가 고립 및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의 휴가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유급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 및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따른 3월 19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발생한 COVID-19 노출로 인한 업무의 관련성 추정 방법 및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고용주는 해당 사례자가 자택 고립하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을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추가 노출자가 발생하면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고용주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국의 지침인 [작업장의 COVID-19 대응법](#)을 참조하십시오.
- DPH의 [입장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작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직원이 현재 고립 및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점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을 점검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근무를 위한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공중 보건국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을 조사하고 시설 대응에 도움을 줄 사례관리자가 배정되었습니다. 공중 보건국은 사례의 집단발병이 COVID-19 창궐에 해당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설의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C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를 방문하십시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직원은 개인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혼자 일할 때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명령에서 예외 대상이었던 직원의 키를 넘는 단단한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직원들 간에 더 넓은 거리를 제공하거나 직원들 사이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COVID-19은 직원들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합니다:
 -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안내판 게시하기,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최소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블 사용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를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가능한 경우, 야외 휴식 영역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항상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늘막과 의자를 설치합니다.
- 직원들에게 매일 안면 **마스크**를 세탁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합니다.
- 모든 작업대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다음 일정에 따라 매 시간 소독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임금과 근로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한해서 휴게실에서 직원 사이에 육(6) 피트 거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합니다.
-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_____
 - _____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_____
 - _____
-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에게 배포합니다.
- 각 근로자에게 개인 도구, 장비 및 작업 공간을 할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예: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책상, 볼펜 등)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 _____
 - _____

B.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쇼핑센터(실내 및 실외)와 쇼핑센터 내의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최대 수용인원 규칙은 고객과 직원 간의 신체적 거리 6피트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 수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 수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를 제한합니다.
-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 외부에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외부 출입구가 있는 매장의 세입자는 해당 DPH 프로토콜인 최대 수용인원의 **50%** 허용 규칙을 준수하여 현재 변경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왑팅과 같은 야외 쇼핑센터는 상인들이 신체적 거리 두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할 수 있도록 테이블, 텐트 및 기타 디스플레이를 간격을 두고 배치하거나 기타 불침투성 장벽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에 제한된 최대 고객 수: _____

- 소매 식료품점은 실내 제한 수용인원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수용인원을 추적하고자 모든 출입구의 출입하는 고객의 수를 엄격히 그리고 계속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이 불충분하거나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용인원이 초과된 소매점은 보건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임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기간은 현장 공중 보건 감사관이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입니다. 가능한 경우,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의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 시각적 표시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장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또는 입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시설 입구 근처이나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매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추적하고, 매장 또는 쇼핑센터가 최대 수용인원에 도달한 경우, 매장 밖에서 고객들이 6피트 간격으로 줄을 서도록 안내합니다.
- 적절한 경우, 현장 보안 담당자는 고객과 일반 대중에게 신체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라고 적극적으로 상기 및 권장하고, 손님과 방문객에게 지정된 식사 구역을 제외하고는 시설 내에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되었다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 도로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매장은 직원들이 미리 주문한 상품을 쇼핑물 밖 지정된 장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손님의 물품 픽업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픽업 장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주문에 대한 선결제를 권장해야 합니다. 고객은 도착하는 즉시 직원들에게 픽업하러 도착했다고 알리고 차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직원은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컨테이너(예: 상자, 쇼핑 카트 또는 기타 용기)에 담아 가져와 고객의 트렁크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 (하나 이상의 입구가 있다면, 직원들)은 시설 입구 근처,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고객들에게 해당 픽업 장소를 안내해야 합니다.
- 테이프나 다른 표시를 사용해 고객이 픽업하러 도착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 줄의 시작 선부터 6피트 간격으로 대기 선을 표시해 이어 도착하는 고객들도 줄을 설 수 있도록 합니다.
- 고객에게 주문한 상품을 전달하는 직원은 안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고객으로부터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직원 간의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주문 상품을 미리 포장하여 상자에 넣은 다음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직원들은 결제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잠시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쇼핑센터의 모든 장소에서 직원과 고객 간의 최소 육 (6)피트 이상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물리적 칸막이나 시각적 신호(예: 직원과 고객들이 서 있을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색 테이프 또는 안내판)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간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동 인구 통제와 군중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여기에는 유동 인구가 단방향으로만 이동하게 하고 시각적인 신호, 물리적인 소품 및 안내판을 통해 고객을 안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거리 유지 및 군중 통제를 돕기 위해, 공간에 맞고 적절한 경우 별도로 입구와 출구를 분명하게 지정합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 않으면 가능한 경우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매장 입주자들과 협력해 각 매장의 외부에 대기하는 손님들을 위한 대기 시스템을 만듭니다.
- 쇼핑센터 운영자, 매장 입주자 및 상인들은 유동 인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신체적 거리두기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매장 입장 대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전자식 입장 예약 및 사전 주문 안내를 포함한 소매 매장의 입장을 대신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이를 권장합니다.
- 상인의 카트나 키오스크는 새로운 유동 인구의 흐름 및 신체적 거리두기 요건을 방해하지 않는 한 쇼핑센터 복도나 보도 구역에서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대기열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상인의 카트나 키오스크를 재배치합니다.

- ❑ 스왑밧과 같은 야외 쇼핑센터는 상인들이 테이블, 텐트 및 진열대를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하거나 다른 불침투성 장벽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 쇼핑센터 운영자, 매장 입주자 및 상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실내의 쇼핑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DPH 프로토콜과 주/지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쇼핑센터 운영 계획을 개발합니다.
- ❑ **실내 쇼핑몰 또는 쇼핑 센터 내부에 위치한 공용 구역은 폐쇄합니다.**
- ❑ 쇼핑센터 부지에 설치된 모든 임시/이동식 테이블과 의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제거하거나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합니다. 지정된 식사 구역을 제외하고 쇼핑센터 부지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반 대중/방문객에게 반드시 상기시켜 줍니다.
- ❑ 적재 구역에서는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조건을 시행하며, 배달 시 비접촉식 서명을 실시합니다.

C.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

- ❑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효과적인 환기가 작은 입자의 공기 매개 확산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 효율로 업그레이드, 모든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의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실내 환경을 위한 환기,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예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환기 및 기타 실내 공기의 질 개선은 안면 가리개 착용(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특정 고위험 환경 제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두기, 자주 손 씻기, 및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제한하기와 같은 의무 예방지침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 ❑ 매장에 도착하는 고객에게 **지정된 식사 구역에서 식사/음용할 때를 제외하고** 매장 실내 또는 쇼핑센터 부지에서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주십시오. 이는 모든 성인과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안면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과 다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고 도착하는 손님을 위해 안면 가리개를 준비해 둡니다.
- ❑ 고객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고객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시설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 매장에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는 고객들은 아이들이 부모 옆에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마스크 허용 연령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비접촉 결제 기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불가능하면 결제 기기를 매 시간 소독합니다. 설명하십시오:

- 공용 구역과 붐비는 구역, 그리고 자주 만지는 물건(예: 난간, 엘리베이터 제어기, 문손잡이 또는 손잡이, 신용카드 결제기기, 엘리베이터 버튼, 에스컬레이터 난간, 등)은 영업 시간 동안 EPA 등록 소독제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매 시간마다 소독합니다.
- 시설 전체와 모든 작업 공간은 적어도 매일 청소하고, 화장실, 자주 만지는 구역/물건은 매 시간 청소합니다. 쇼핑센터 운영 시간은 정기적인 정밀 청소 및 제품 보관 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공용 화장실은 EPA 등록 소독제를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매 시간마다 소독합니다:

- 공공 분수식 식수대를 차단하고, 작동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고객들은 직원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휴지, 쓰레기통을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했습니다.
-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둔 탈의실은 직원이 모니터합니다. 고객이 입어보고 사지 않은 옷 또는 신발은 매장의 옷걸이나 선반에 다시 진열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따로 보관합니다.
- 어린이 놀이 공간이나 실내 놀이터, 회전목마, 놀이기구 또는 아케이드와 같은 기타 편의 시설은 폐쇄 상태로 유지합니다.
- 쇼핑센터에 위치한 실내 가족 오락 활동, 그리고 술집은 임시 휴업을 유지합니다.
- 실내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푸드코트의 식사 구역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인원의 25%에 한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내외 식사 구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HP의 식당 프로토콜: 부록 I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내외 식사 구역에서 플렉시글라스 또는 기타 장벽은 테이블 사이에 8피트,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6피트 거리두기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야외 식사 구역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지정된 식사 구역을 제외한 실내 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부지에서는 어디서든 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 선택 사항-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예: 노인 전용 시간 제공, 온라인 주문/픽업 주문 권장, 붐비지 않는 시간대 구매 보너스 제공):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본 프로토콜 사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COVID-19 안전 준수 인증서 사본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COVID-19 안전 준수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싶으시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설은 요청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에 프로토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야외 쇼핑몰, 스왑밋 및 기타 아울렛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6 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안면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의 필요성, 정기적인 손 씻기의 중요성 및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기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추가 자료 및 업종별 사용 가능한 안내문 예시를 보시려면 카운티 DPH COVID-19 지침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쇼핑 센터 전체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푸드 코트에 지정된 실내 식사 구역과 지정된 야외 식사 구역을 제외한 실내 쇼핑센터 안에서는 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 쇼핑 센터 전체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손 소독제 디스펜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 소매업체는 온라인 매체(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영업시간, 안면 마스크 사용 필수, 허용 인원 제한, 사전 주문, 선불, 픽업 및/또는 배송과 관련된 정책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 노인 및 건강이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전용 쇼핑시간을 시행하고, 필요 시 청소를 완료한 바로 다음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손님/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객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고객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마지막 개정일: _____